

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3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법적근거가 상이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, 심의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구성·운영하고
-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(개정 취지)
- 제명 변경
- 조례의 목적 개정(안 제1조)
-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및 호 삭제(안 제2조, 제2조제2호)
-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직위명칭 변경(안 제3조제2항, 제3조제3항제2호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2. 5. ~ 2. 25. [20일간]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경제국장”을 “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, 문화·체육업무 담당 실·국장,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·국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의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”를 “「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김 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정심사팀장 김 재 홍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수 연 (행정 2793)

<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안산시 지방재정계획 ·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·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안산시 지방재정계획 · 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. (생 략) <p>제3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<u>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<u>기획경제국장, 복지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</u> <p>④ (생 략)</p>	<p><u>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, ----- <u>예산업무 담당 실 · 국장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예산업무 담당 실 · 국장, 문화 · 체육업무 담당 실 · 국장,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 · 국장</u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